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4
----------	-------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의자 : 박경미 · 강창일 · 최재성

신창현 · 천정배 · 송갑석

윤후덕 · 박정 · 윤준호

신용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 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의 근간으로서 기초과학 본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학문으로서의 기초과학의 진흥과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법령에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 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과학”이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을 말한다.
2.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연구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u>기초연</u> <u>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u> <u>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u> <u>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u> <u>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u> <u>한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u>사용하는</u> <u>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기초과학”이란 수학, 물리,</u> <u>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u> <u>들 사이의 융합 학문을 말한</u> <u>다.</u></p> <p>2. “<u>기초연구”란 기초과학연구</u> <u>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u> <u>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u> <u>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u> <u>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u></p>
<p><u><신 설></u></p>	